

문서번호 : 11-09-사무-24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제주해군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장 제출
전송일자 : 2011년 9월 6일(화)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7매

**[보도자료] 민변, 제주해군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장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부지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는 유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위반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오히려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령을 악의적으로 무시한 채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바,
3. 김성찬(해군참모총장), 이은국(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성명불상의 서귀포시 강정동 연안 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본부 관계자들, 해군본부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2011년 9월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우편발송)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고발장 첨부

2011년 9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이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1 -

고 발 장

고 발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피고발인 1. 김성찬(해군참모총장)
2. 이은국(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3. 성명불상의 서귀포시 강정동 연안 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본부 관계자들
4. 해군본부

제주지방검찰청 귀중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이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2 -

고 발 장

고 발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연락처 : 02-522-7284
담당변호사: 장정욱 (02-3482-3348)
강기탁 (064-702-6181)

피고발인 1. 김 성 찬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201-215
연락처 : 042-553-5251

2. 이은국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201-215
연락처 : 064-797-4390

3. 해군기지성명불상의 서귀포시 강정동 연안 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
기지사업단 관계자들

4. 해군본부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201-215
연락처 : 042-553-5251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 위반으로 고발을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3 -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들의 지위

가. 피고발인 4. 해군본부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제1항, 같은법 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강정마을)에 해군기동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두시설과 지원시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361,552제곱평방미터(해상매립 201,960제곱평방미터, 항만시설 166,645제곱평방미터)을 수반하는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공유수면매립 면허(승인)를 받은 자로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공사) 시행자입니다.

나. 피고발인 1. 김성찬은 해군참모총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시행자인 피고발인 4. 해군본부의 대표자입니다.

다. 피고발인 2. 이은석은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으로서 소속 인원을 지휘, 감독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진행 및 조정, 통제하는 자입니다.

라. 피고발인 3. 성명불상의 서귀포시 강정동 연안 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기지사업단 관계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시행자인 피고발인 4. 해군본부의 대표자 해군참모총장 피고발인 1. 김성찬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고발인 2. 이은석의 지휘, 감독하에 제주 해군기지사업 건설공사를 진행 및 조정, 통제하는 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공동범죄행위

가. 매장문화재 발견 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무 및 위반시 처벌에 관한 규정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4 -

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에 의하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사업부지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지역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부지는 2007년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육상,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전체 사업대상면적(육상)에 대하여 청동기 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그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의뢰를 받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입니다.

다. 매장문화재의 발견

-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원형 보존 2. 이전(移轉) 복원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이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의뢰를 받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강정 포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 유구, 주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자연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중덕삼거리,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는 청동기 ~ 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라. 피고발인들의 공동범행

피고발인 1., 2., 3.은 위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승인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부지 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청동기 ~ 초기 철기시대 및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는 유적이 발견되었으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모하여 그동안 다양한 사유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1. 9. 2. 경계 펜스 설치 공사를 한 다음 같은달 5.부터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결 론

피고발인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공사)의 시행자의 책무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부지에서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는 유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경관을 보호, 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령을 악의적으로 무시한 채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조직적으로 악질적인 범죄를 자행하는 범치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범위반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시어 피고발인 1., 2., 3.,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에 따라, 피고발인 4.는 같은법 제37조 양벌규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이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1. 9. 6.
위 고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인)

제주지방검찰청 귀중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